

등	해1-2	61
---	------	----

대전교도소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자료집

이제 분명해 지는 것은 일제시대때부터 지속되어왔던 '전향거부투쟁'은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내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 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선 식민지 해방투쟁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었고 반공과 반북 이데올로기를 그 기반으로한 독재정권과의 피비린내 하는 살벌한 정치투쟁이었다.

〈말지 3월호중 '감옥에서 죽은 비전향장기수의 이력서'에서〉

3년 반동안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죽음의 명예를 벗고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다. 나를 부활케한 생명의 은인, 민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나의 비전향의 주춧대가 된다.

〈현재 비전향으로 8년째 복역중인 김성만씨의 편지 중에서〉

전향제도의 문제는 한 개인의 정치적 생명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민족 문제이다.

〈현재 비전향으로 8년째 복역중인 강용주씨의 편지 중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T. 745-5604, 763-2606)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사상전향제도란?

사상전향제도는 국가권력의 강제에 의해 진보적인 사상가의 신념을 강제로 개조시키는 제도이다.

사상전향제도는 가속적으로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던 일본제국주의가 자국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우리민족의 민족해방운동을 포함한 반체제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켜 나가던 과정에서 점차 형성되어, 1931년에 최종적으로 확립된 일본제국주의 발명품으로서 일본 특유의 가족주의, 집단주의, 전통적 간생개념에 바탕을 둔 극히 일본적인 제도이다. 이 사상전향제도의 실시는 일제의 대표적 악법인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병행되었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주의가 고양되자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 제도는 제국주의 일본이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후 치안유지법이 폐지되면서 함께 폐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방과 함께 사실상 폐지되나 그 후 이데올로기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6년경 부터 제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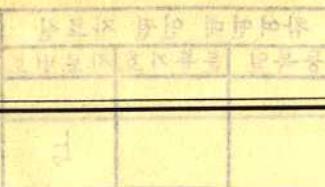
그후 비전향수는 19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원형기를 다 마치고서도 "전향치 않았다"는 이유로 막바로 감호소로 직행하거나 출소후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난데없이 끌려가 무기한의 옥살이를 해야 했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도 같은 이유로 최고 42년까지 복역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전향제도는 "범죄인의 개선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주의 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다. 즉 비전향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는 '범죄인의 개선'과는 관계없고 특정사상을 가졌음을 이유로한 지속적인 구금은 '사회복귀'와도 무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다.

이는 또한 독재정권을 유지해내기 위한 반복, 반공이데올로기 획일화 정책의 산물이다.

사상전향을 하느냐의 여부는 순수한 개인의 양심에 속하는 문제이며 국가권력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폭력을 동반한 강제적 전향의 강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체제의 비민주성과 협약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제도가 존속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지양하는 세계사적 흐름과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냉전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성명서

□ 대전교도소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무릇 인간의 양심이란 원래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과 그 애정을 통해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사회정치적 양심인 어떤 사상을 지키고자하는 정치범의 신념은 그것이 한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민주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8.15와 함께 시작된 외세에 의한 분단, 전쟁의 상처는 깊으며 그 때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참된 양심들은 오랜 세월 우리에게 잊혀진 채 차디찬 감옥의 어둠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사상전향제도'는 일제시대때 식민지 해방투쟁을 거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간의 독재정권에 의해 악습되면서 참혹한 삶을 강요하며 수많은 정치범을 살해했고 정치적 생명을 강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인간의 가장 깊은 성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 침입이며, 반공과 반북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독재정권의 극에 달한 정치적 폭력입니다.

이제 외세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민족적 대명제가 성숙되는 가운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는 시점입니다.

분단의 모순속에 자신의 양심을 굳굳히 지켜내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사상을 전향치 않았다"는 이유로 길게는 30년에서 42년까지 이르는

무한궤도의 옥살이를 해야 하며 목숨마저 전향의 흥정거리로 전락하는 참혹한 장기 수의 실태를 폭로하고, 궁극적으로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사상전향제도의 철폐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되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로 가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현재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이름없는 장기복역 양심수들의 민족통일에 대한 순박한 신념과 그 양심으로 흘린 피와 눈물을 바르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십년간 옥고속에서도 인간의 지고한 양심을 지키고 분단의 논리를 거부하기 위한 비전향장기수분들의 끝없는 노력의 하나인 이번 헌법소원을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1992년 2월 1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한국 기독교 협의회 인권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헌법소원 진행과정에 대한 경과



- 대전교도소의 비전향 장기수 44명은 '사상전향제도'의 문제를 여론화시키기 위해 89년부터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 91년 3월경에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의균 (국가보안법위반, 8년, 6년 복역)씨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행정소송의 형태로 문제제기를 하고 민변소속 박원순 변호사와 접견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 그 준비가 계속되었다.
- 91년 6월 옥안에서 위 논의가 확대되고 개별적인 차원을 지양하고 집단적인 형태로, 그리고 소제기의 형식은 하나하나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보다 총괄적인 헌법소원으로 묶어서 할 것을 결정하고 결의하였다.
- 91년 9월 민가협에서는 (특히 장가협내에 소제기 가족을 중심으로) '사상전향제도'의 철폐와 비전향장기수 특히 20년이상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는 33명의 초장기수 문제를 대중에게 선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위와 같은 법률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밀반침하기로 결의하였고 장터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음.
- 91년 10월 말, 이종걸 변호사의 1차 접견이 있었다
접견 대상은 장의균, 강용주 2인 이었고, 내용은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치적 입장과 원칙 등을 공개하였다.

* 참고 : (대전교도소 헌법소원 소제기자의 정치적 입장 요약)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상전향제도'는 근대국가의 법개념이나 유엔인권규약과 명백히 모순되며, 심지어

파소정권의 헌법에 조차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에 계속해서 전향제도 폐지투쟁을 해왔으며 그 투쟁은 전향제도가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헌법소원이 위 사상전향제도 폐지투쟁을 위한 '합법투쟁'이라는 전술적 고려에서 위치지우며, 다른 여타의 다양한 영역과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한다함은 헌법을 인정하고 그 안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천부적으로 인간에게 보장된 기본권과 민주적 제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 91년 11월에 민변소속 이덕우, 임종인, 이종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실무적인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 소장이 91년 12월 말경에 작성되었으나, 민가협의 의견이 소제기의 일시를 조금 더 연장하여 2월 18일 남북고위급회담 일정과 남북합의서 발효시기를 맞추어서 다음해 2월 10일 즈음으로 예정하여 소를 제기하자는 의견이 나와 연기되었다.

- 92. 1. 30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한 1차 유관단체 설명회 및 간담회가 한교협 인권위, 불교 인권위, 민가협, 고난받는 감리교인을 위한 공동모임, 천정연 인권위의 관계자와 서준식씨가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소제기 방법의 문제, 운동적 차원에서의 전망등을 논의하였다.

- 92. 2. 10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한 2차 유관단체 간담회가 있었다. 불교 인권위, 전국연합 인권위, 민가협, 천정연 인권위, 서준식씨가 참여한 가운데 소제기 일자를 2월 15로 결정하고 유관단체의 공동지원을 결의하였다.

- 2월 15일 "대전교도소 비전향 장기수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연합 인권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인권위, 불교 인권위, 고난받는 감리교인을 위한 공동모임, 기독교 인권위의 주최로 열었다. 同日 이종걸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2월 말 이종걸 변호사의 소제기자에 대한 2차 면담이 있었다. 최하종, 신인영, 김성만, 양희철씨를 면담하고 사상전향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수집하였다.

- 2월 말 대전교도소 소제기자는 헌법소원제기에 따른 이유서 작성을 위한 집필을 신청했으나 "여지껏 관례가 없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소당국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 3월 초 임종인 변호사의 소제기자에 대한 3차 면담이 있었다. 42년간 복역한 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만나 사상전향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수집하였다.

- 3월 14일 헌법재판소 제 3지정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서'가 이종걸 변호사에게 통보되었다.

사상전향제도에 따른 불이익 사례

전향이라함은 특정한 사상을 포기하고 다른 사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성을 띤 '제도'로써의 전향은 애초부터 그 속성상 철저히 국가권력의 폭력적 강제일 수 밖에 없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되어 동서냉전의 산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지속되고 있는 사상전향제도는 독재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획일화 정책의 산물이다.

□ 불이익 사례

1) 형기의 문제

소내취업을 하는 일반무기수의 경우는 대략 16년에서 18년을 복역하면 모두 석방됨에도 불구하고, 비전향장기수들은 엄중독거 처우를 받고있기 때문에 출역을 나갈 수 없고 따라서 행형소각점수를 소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해 감형·가석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3.40년 초장기구금자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례적인 '형집행정지' 형식의 출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1년이내의 시한부삶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91년 5월 25일 석방된 비전향수 왕영안씨의 경우는 위암 3기로 판명되었다) 그것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않고 많은 수가 치료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옥사했다.

도표 1) 비전향 장기수 연령별 분류

70세 이상	69-60세	59-50세	49-40세	총 계
8명	24명	8명	4명	44명

도표 2) 비전향 장기수 복역년수별 분류

40년 이상	39-30년	29-20년	19-10년	총 계
3명	12명	18명	11명	44명

(1992. 3. 1 현재)

2) 독거수용의 문제

행형법에는 독거수용을 2년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비전향수는 제외됨으로써 3.40년 무기한 장기독거수용을 강요당하고 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기만씨등 2명은 오랜 독거생활과 물리적·정신적 고민에 의한 정신분열증세를 보였으나 89년 전향하여 석방될 때까지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외 혼자서 거의 생활할 수 없는 병약자, 반신불수, 불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독거생활을 해오고 있다.

3) 소내 취업의 금지

비전향수는 출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공간이 겨우 화장실을 포함해 1평 미만이며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취업이 금지됨으로 해서 단계별 승급(누진처우 제도에 따라 처음에는 4급부터 시작하여 취업자의 작업량과 반성정도에 의해 3급, 2급, 1급으로 급수가 올라가며 승급에 따라 소내처우가 좋아지고 가석방도 빨리된다)이 불가능하여 처우의 완화나 가석방·감형의 대상에서 어김없이 제외된다.

주목할 점은 독거수용과 취업의 금지가 기타 처우상의 모든 불이익, 치료 소홀 등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소측은 비전향수가 소내처우의 개선을, 치료를 요구할 때마다 "당신들은 취업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돼" "당신들은 엄중 독거수용자니까 안돼"라고 일관한다. 심지어 거의 죽어가는 중환자의 경우에도 병원은 고사하고 동료들이 병수발을 들어줄 것을 요청해도 "비전향수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끝내 훌로 병사한 사람도 많다.

4) 의료상의 처우문제

비전향수에게는 엄중독거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중환자일 경우에도 병사로 방을 옮기는 것이나 외진을 받는 예는 극히 드물다.

(1) 76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최한식씨는 심장병과 고혈압이 악화되어 병사로의 전방을 요구했으나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약까지 불허시키고 동료들의 병수발 요청까지 불허하여 결국 76년 5월에 병사했다.

(2) 대구교도소에서는 68년에서 75년 사이에 오랜 육고와 영양실조, 고문에 기인한 불치병을 앓던 김대섭씨를 비롯한 8명의 비전향수가 독방에서 병사했다.

(3) 86년 대전교도소 최주백씨는 위암 3기로 죽음을 선고받은 위급한 상태에서 임00 교회사로부터 계속 전향을 종용받다가 끝내 외진 한번 받지못하고 10월에 병사했다.

(4) 대전교도소 최재필씨도 전향을 하지않고 엄중 독거수용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외진이 불허되고 87년 5월 상순에 병사했다.

(5) 86년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이선우씨는 폐암 3기의 진단을 받고난 뒤 전향을 하지 않으면 외진을 받을 수 없다는 회유에 울며 겨자먹기로 전향을 하고 광주 모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미 때가 늦어 입원한 지 얼마안돼 사망하였다.

현재 민가협에서 사상전향제도와 관련되어서 확인된 옥중 사망자의 숫자는 모두 67명이다. 확인되지 않는 숫자는 이를 훨씬 넘어서 것으로 추정된다.

5) 기타 소내 처우상의 문제

(1) 운동

70년대 후반까지 대전교도소 비전향수들은 방사선형 우리에 한사람씩 격리되어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5분에서 10분 사이에 운동을 끝내야 했다.

(2) 서신

5.16구태타에서부터 80년 초반까지 비전향수는 직계가족과도 서신을 할 수 없는 것이 관례였다. 허가된 서신에 한해서도 글자수를 200자내로 제한시켰으며 한글자라도 넘으면 시정할 기회도 주지않고 그대로 폐기시켜 버렸다. 가족이외에 일체의 서신왕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많은 비전향수는 수십년간 편지 한통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3) 접견(소장, 순열관, 면담 포함)

비전향수는 원칙적으로 직계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되었고 전향공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만 허가하였다.

소장이나 순열관과의 면담을 신청할 경우 당연히 허가가 되어야 하나 거의 불허되었다. 74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권낙기씨는 순시나온 보안과장에게 소내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는데 건방지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하실로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 다시 75년 7월30일에서 8월27일까지 28일간 소장접견을 요구하며 죽음을 무릅쓴 단식농성을 한 끝에 힘들게 소장면담을 할 정도였다.

(4) 사책

의학서적, 스포츠 잡지, 중고등 학교 교과서류를 제외하고 거의 불허되었다. 소지할 수 있는 책의 수도 제한을 해서 사전류를 제외하고 3권 이상 넘을 수 없었으며 73년에서 75년은 모든 책을 강제적으로 압수당했다.

(5) 집필

5.16군사구태타 이후 필기도구 소지가 금지되었고 검방때 연필등이 발견되면 혹심한 구타를 당했고 징벌을 살아야 했다. 현재까지 집필금지는 계속되고 있고 현재 구속중인 동화작가 장의균씨는 감옥에서 구상한 동화를 집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

(6) 사약(외부에서 차입해준 약이나 본인이 구입해서 먹는 약)

증환자의 경우 극히 부분적으로 사약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극심한 전신쇠약,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김규호씨는 15년동안 가족이 차입해 준 약으로 간신히 건강을 지탱해 왔는데 75년 전담반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약을 몰수해 전향서를 요구한 탓에 76년 6월 항의자결을 시도했고 응급조치를 제때 받지못해 끝내 목숨을 거둔 예도 있었다.

(7) 주식, 부식

70년에서 80년대 경북대 의대교수로 재직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소내 간병으로 계셨던 김대수박사의 얘기로는 판에서 지급되는 주.부식이 맛은 고사하고 그 질과 양만으로는 대부분 7년만에 자연사한다고 진단할 정도로 상태가 열악했다. 60년대에서 70년대 많은 사상범들이 영양실조로 숨져갔으며 이것과 관련해 최하종, 안영기, 장의균, 강용주씨등 수십명이 죽음을 무릅쓴 단식농성을 했어야 했다.

• • • •

더욱 가속화될 남북관계의 진전과 상호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측의 가시적인(허구적인?) 노력들이 보이는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분단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문제해결은 통일운동의 발전과 사회곳곳에 놓여있는 분단의 사슬을 걷기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이들의 석방은 해방이후부터 왜곡된 한반도 전체의 역사를 올바로 복원하는 첫걸음라 할 것이다.

국내외 동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요약)

청구인

김 선명 외 41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원순
변호사 이 종걸

침해된 권리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권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 11조 평등권

침해된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수형자분류처우규칙 (1969.5.16 법무부령 제111호)

제 2조 제 1항 제 5호

청 구 의 취 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1969.5.16. 법무부령 제 111호) 제 2조 제 1항 제 5호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의 이유

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및 청구인들의 지위

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의 지위

(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수형자의 교정누진처우제도는 형벌의 가혹성과 비인도성 또는 구금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수형자에게 사회복귀에 대한 희망을 주고 수형생활에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주적인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이러한 교정누진처우제도로서 수형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2) 분류처우심사의 취지

분류처우심사는 첫째, 교정누진처우제도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누진처우의 목적에 귀속되는 기술적 지침에 불과하다.

둘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분류인 '범죄인 분류'가 아니고, 행형학상 교정처우의 요청에 따른 '수형자 분류'라 할 것이므로 수형자의 범행은 분류의 하나의 자료일 뿐이다.

셋째, 수형자의 인격동일체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를 판단의 기초로 하는 종합판단이므로 어느 한 요소를 결정적으로 우대하는 태도에는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3) 동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의 지위

그런데 동규칙 제 2조 제 1항 제 5호는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의 적용에 제외하는 바 이는 다음 "2.'나'항" 이하에서 보듯이 청구인들에게 사상전향을 강요함으로써 청구인들이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내포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전근대적 사상전향제도의 유물

사상전향의 강요는 이미 이전의 세계사에서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이나 파쇼전제체제하의 독일나찌즘,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시대에나 찾아볼수 있었던 사상탄압법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교도소에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미 사상전향제도의 대표적 표본으로서 사상을 전향하지 않는 좌익수들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된 형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감호라는 새로운 형벌을 가하는 사상탄압법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바 있다. 이는 이제까지와 같은 사상전향제도가 야기하는 사상의 자유와

천부의 기본권 말살이 더 이상 용납될 수는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선고된 형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복역중인 청구인들은 아직도 사상전향을 강요받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 그늘 속에 파묻혀 있다. 이러한 사상전향제도를 교도소내에서 여전히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이다.

나. 청구인들의 지위

(1) 구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 수형자

(2)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반정부, 반체제운동을 한 사람

그들의 범죄는 자신들의 정치적 신조와 사상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3) 사상전향의 거부

청구인들은 자신의 내심적 의사에 관한 사상을 부인하고 현 정부 체제에 대하여 일종의 항복문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제도인 사상전향제도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2.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가는 아래와 같다.

가. 분류처우기준

(1) 분류등급

동규칙은 개선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있고 계급을 누진하는 방식으로 처우를 향상시키고 있다.

(2) 분류방법

법무부 교경예규에 의하면,

가) 수용분류

수형자를 어떤 시설에 수용하는가를 정하는 것 (별지참조)

나) 처우분류

대시설 주의를 취한 우리나라에서 수형자에게 구체적인 처우단위를 정하는 것

(별지참조)

다) 관리분류

수형자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계호정도를 정하는 것 (별지참조)

(3) 누진계급별 처우

누진계급은 4계급으로 나누어 행형성적에 따라 진급하도록 하는데, 책임점수를 정하여 이를 성적으로 소각하면 1계급씩 진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청구인들은 위 규정상의 D급에 분류됨으로써 위 처우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시에 계급의 진급 기회가 박탈되어 일생동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당하고 가석방의 가능성은 전혀 봉쇄당하고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가) 진급, 가진급에서 누락

나) 자유교담의 불허

다) 접견, 서신, 집필, 사책의 금지 내지 제한

라) 소내의 시설물이용 및 행사참여 금지 내지 제한

마) 운동의 감시, 제한

바) 독거수용

사) 주식, 부식, 특찬급여의 불이익처우

아) 소지품, 차입물품사용 제한

자) 귀휴, 사회참관의 이용, 제한

차) 의료상의 불이익처우

카) 가석방대상에서 누락

(2) 청구인들의 개별적인 경우

추후 제출 대체불통 수단 등록부 등록증 제5호 청구인 등록증 제5호로

1) 양도의 자유권의 침해

다. 다른 구제수단의 부존재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는 동 규정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여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처분을 기다림없이 막바로 제5호에 의해 동규칙의 적용에 배제되어 차별적 처우를 받는바, 행정소송등 기타의 구제수단을 통하여 불이익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없고 직접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제2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 헌법소원제기기간의 문제

이 규정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과거 한시점에서의 일회적인 헌법위반의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침해상태가 발생하고 그 상태가 존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기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동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인 이유

가. 기본권제한의 헌법원칙 (헌법 제 37조 제2항) 위배

(1) 기본권 제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식의 위배

청구인들의 기본권제한은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의미의 법률이 아닌 단순한 부령에 의해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런 법률적 위임도 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 것임으로 이것은 헌법에 반한다.

(2) 기본권제한의 목적 부존재 - 국가안전보장

청구인들은 징역형에 처하여지고 있고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여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차단당한 상태이다. 청구인이 전향서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형중인 청구인들에 의하여 어떠한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본권제한의 목적 부존재 - 질서유지

위 청구인은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고, 따라서 공공의 사회질서나 도덕질서를 문란하게 할 행위를 할 가능성이 이미 봉쇄되어 있다.

교도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도 행형법 제 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징벌조치가 있으므로 질서문란을 막기위한 장치는 이미 충분하다.

(4) 기본권제한의 목적 부존재 - 공공복리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공공복리란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개개인의 충돌되는 이익을 뛰어넘어 인류적, 사회적, 국가적 이익등 집단적인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전향서를 쓰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집단적 공동이익의 증진이 실현된다는 관계는 전혀 없다.

(5) 기본권제한의 필요성의 부존재 - 보충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란 어쩔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이여야 하며(보충의 원칙), 또 그 제한의 정도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비례의 원칙)을 의미한다.

위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성이 존재하지 않고 제한의 정도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6) 기본권제한의 한계일탈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헌법 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위규정은 헌법 제 10조에 선언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의 그 본질적 내용인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7) 기타 기본권제한의 제한원리 위배

(가) 잔혹하고도 비정상적인 형벌의 금지원칙

위 규정은 인간의 내심의 사상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며, 또한 이에 불응함을 이유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지 못하는 생활을 지속할 것을 강요함으로 명백히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가하고 있다.

(나) 이중기준의 원칙

위 규정은 청구인들의 정신적 자유권중에도 가장 근원적이며 정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그 합헌성의 판단에서 다른 기본권의 제한의 경우와 달리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위헌판단이 내려 져야 한다.

(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무리 위험한 것이라도 객관적인 외부의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한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나. 사상전향의 강요와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 권리 침해

(1) 양심의 자유권의 의의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동종의 정신적 자유권중 가장 근원적인 자유권의 위치에 있다. 인간의 불가침의 성역인 내심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라는 것에서 볼때 양심의 자유권은 민주주의 국가헌법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2) 절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양심의 자유권은 소위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일컬어 지는 바, 이것은 양심의 자유권이 자유권이 헌법 제 37조 제2항 단서가 가리키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

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3) 양심의 자유권의 내용

양심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권(침묵의 자유)은 이것이 객관적인 외부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내면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자유권에 불과하므로 절대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십자가 밟기나 태극기 밟기 등의 예로 보아도 이러한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으로 부인한 전체주의 독재체제에 상징적으로 행해졌던 만행인 것이다.

(4) 양심의 자유와 그 내용으로서의 사상의 자유

사상이란 개인의 정치적 신조는 물론이고 철학과 세계 역사의 발전법칙, 사회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양심의 자유권 속에 사상의 자유권이 포함되어 함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청구인들이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 - 사상전향의 강요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음으로써 양심의 자유권의 한 내용인 양심형성의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또한 사상을 포기하는 전향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양심수호의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6)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배제조항의 위헌성

위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는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다. 행복추구권의 침해 - 사상전향을 않는데 대한 보복의 구체적 형태 I

(1)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내용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광의에 있어서 개별적 기본권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자연권으로서의 기본권을 의미한다.

(2) 청구인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

- 동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자유교담을 허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전체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점과 회망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대표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접견을 허가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제46조에 의한 급수에 따른 접견 및 서신발송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및 서신발송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45조에 의하여 급수의 상승에 따른 급여의 개선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0조에 의하여 거실을 장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1조에 의하여 특찬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차입물품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3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식기 기타 잡구를 대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4조에 의하여 개인교화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5조에 의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6조에 의하여 토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7조에 의하여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사회경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신문을 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60조에 의하여 가족사진을 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 직계존속, 배우자 기타 근친자에게 송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64조에 의하여 전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작업상여금을 자기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자기의 작업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67조에 의하여 작업지도를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작업시간외에 자기를 위한 노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 동규칙 제69조에 의하여 교도관의 사무처리 기타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다.

(3)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적용배제조항의 위헌성

위 규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 규정은 기본권제한이 초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

위 규정은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반이다.

위 규정은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라. 평등권의 침해 - 사상전향을 않는데 대한 보복의 구체적 형태 II

(1) 평등권의 법적성질과 그 내용

헌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또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 위 다. 항의 (2)에서 본 바와 같다.

(3) 동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상이점

동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집행할 형기가 6월 미만이 자', '만 70세 이상의 자' '임산부', '불구자 및 계속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미약자로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자' 등을 동규칙의 적용대상에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호의적 처우, 적극적 평등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5호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와는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한다. 평등권을 보장한다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모든 점에서 항상 무차별적으로 균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차별은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상대적 평등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입법목적 (공공의 이익실현)이 되어야 한다.

제5호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유린하는 것이 되고, 또한 이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 수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4) 평등권을 침해하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배제조항의 위헌성

청구인의 차별대우는 '사상'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인 점에서 비합리적인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정명으로 반한다.

이외에도 위 나항의 (3)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원칙과의 관계는 평등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평등권을 다른 수형자들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부분적,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형생활의 전기간 모든 면에서 평등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소제기 장기복역양심수 명단



이 름	나이 (생년월일)	형기	구속일자	복역년수	분 류
1 강용주	31세 (62. 6. 18)	무기	85. 9. 9	8년복역	구미유학생사건
2 고성화	76세 (16. 8. 20)	무기	73. 3. 16	20년복역	남파공작원
3 권양섭	75세 (17. 7. 27)	무기	72. 2. 5	21년복역	통혁당사건
4 김동기	60세 (32. 10. 19)	무기	66. 5. 18	27년복역	남파공작원
5 김명수	71세 (22. 5. 1)	무기	57. 7. 28	36년복역	남파공작원
6 김선명	68세 (25. 2. 20)	무기	51. 10. 15	42년복역	남파공작원
7 김성만	37세 (56. 10. 10)	무기	85. 9. 9	8년복역	구미유학생사건
8 김용수	61세 (31. 9. 30)	15+10	67. 8. 20	26년복역	남파공작원
9 김은환	63세 (30. 7. 12)	무기	69. 9. 8	24년복역	남파공작원
10 김익진	63세 (30. 7. 13)	무기	69. 6. 10	24년복역	남파공작원
11 김인수	70세 (23. 5. 7)	무기	62. 8. 12	31년복역	남파공작원
12 김창원	60세 (33. 10. 17)	무기	69. 6. 12	24년복역	남파공작원
13 박문재	70세 (23. 9. 14)	무기	79. 6. 16	14년복역	개별국보
14 박왕규	63세 (30. 1. 15)	무기	69. 9. 9	24년복역	남파공작원
15 박종린	60세 (33. 3)	무기	59. 12.	35년복역	남파공작원
16 손성모	63세 (30. 1. 15)	무기	85. 2. 15	13년복역	남파공작원
17 신광수	64세 (29. 6. 27)	무기	85. 2. 16	8년복역	재일교포
18 신귀영	56세 (37.)	15년	80. 2	13년복역	일본관련
19 신인영	64세 (29. 12. 6)	무기	67. 3. 9	26년복역	남파공작원
20 안영기	64세 (29. 6. 19)	무기	62. 8. 12	31년복역	남파공작원
21 안학섭	63세 (30. 4. 7)	무기	53. 3.	40년복역	남파공작원
22 안희철	58세 (35. 11. 17)	15년	76. 12.	17년복역	남파공작원
23 양정호	62세 (31. 4. 3)	무기	69. 6. 18	23년복역	남파공작원
24 양희철	59세 (34. 9. 25)	무기	63. 4. 24	30년복역	남파공작원
25 오형식	63세 (30. 4. 5)	무기	69. 6. 12	24년복역	남파공작원
26 우용각	64세 (29. 11. 28)	무기	58. 2. 9	35년복역	남파공작원
27 유원호	63세 (30. 7. 3)	7년	89. 4. 16	4년복역	방북사건
28 윤수갑	70세 (23. 4. 7)	무기	67. 9.	28년복역	남파공작원

“분단의 철창을 함께 열고자 합니다”

29 윤용기	67세 (26. 7. 2)	무기	59. 7. 3	34년복역	남파공작원
30 이경찬	58세 (35. 10. 15)	무기	65. 8. 12	28년복역	남파공작원
31 이공순	59세 (34. 12. 3)	무기	67. 12. 10	26년복역	남파공작원
32 이재룡	49세 (44. 10. 2)	무기	70. 6. 19	23년복역	남북어부
33 이종환	71세 (22. 1. 5)	무기	51. 10.	42년복역	남파공작원
34 장병락	59세 (34. 7. 25)	무기	62. 4. 5	31년복역	남파공작원
35 장의균	42세 (51. 3. 2)	8년	87. 7. 5	6년복역	민주화운동관련
36 최선묵	65세 (28. 7. 17)	무기	62. 8. 12	31년복역	남파공작원
37 최수일	54세 (39. 5. 25)	무기	65. 3. 4	28년복역	남파공작원
38 최하종	66세 (27. 3. 21)	무기	62. 3. 5	31년복역	남파공작원
39 한장호	70세 (23. 5. 1)	무기	57. 11. 20	36년복역	남파공작원
40 홍경선	68세 (25. 5. 21)	무기	67. 9. 17	26년복역	남파공작원
41 홍명기	64세 (29. 4. 5)	무기	62. 4. 5	31년복역	남파공작원
42 홍문거	72세 (21. 9. 14)	무기	57. 5. 30	37년복역	남파공작원

- 1992년 4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 복역일수는 체포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전교도소 비전향 장기수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현법소원”
지원을 바랍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땅의 분단세력과 반공지상주의는 항상 이들 정치범을 학대하여왔고 우리에게 이들에 대한 평가절하를 강요해왔고, 우리 또한 그런 과정에서 분단체제 특유의 왜곡된 감수성을 지녀왔습니다. 우리가 반공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이들의 허상에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동안 민중이 주인이 되는 통일세상을 갈망하며 온몸으로 치열하게 분단체제를 거부하고 이 정치범들은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잔인한 폭력 속에서, 혹은 병마에 시달리면서, 혹은 우리의 적대시와 멸시와 천시속에서

■ 구좌번호/ 제일은행 : 151-20-020995 서울신탕 : 15707-1965300

한일은행 : 013-158221-12-401

■ 예금주/ 장기수

■ 연락 및 문의처/ 745-5604, 763-2606, FAX : 745-5604